

문서번호 공익법2015-1021-03

수 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통신심의기획팀 전화 02-3219-5126 / 팩스 02-3219-5129)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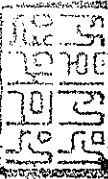
제 목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15. 10. 21. (총 5 쪽)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가 2015년 10월 2일 입안 예고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검토 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법인·정강자·정현





<붙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지난 2015년 10월 2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음.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10조②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함.

1. 개정이유에 대한 의견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로 “명예훼손 등 일부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의 제한규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심의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심의규정 조항을 삭제하여 제3자 신청 및 방심위 직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개정안대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 제3자 신청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3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지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임.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의가 개시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무엇보다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표현물들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함. 표현의 자유 또한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의 보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방심위가 심의하는 다른 유형의 불법정보에 비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더욱 강력하게 고려해야 할 유형의 정보임.
- 개정안대로라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당사자가 아닌 지지자나 지지단체들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하여 삭제할 수 있게 됨.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여론이나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비판을 손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임
-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보장하는 것임. 그럼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이용된다면 오히려 이용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것

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현재의 심의규정 하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검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그럼에도 직권심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며 검열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은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권익을 제고하고자”한다는 개정이유에 부합하는 개정방향이 될 수 없음.

2.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심의신청 자격 제한규정 완화(안 제10조제2항)

개정안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이 당사자,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3자 신청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방심위 직권 심의도 가능해질

- 방심위는 그간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3자 심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현행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심의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방심위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등의 피해 여성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옴
- 현재 방심위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 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규정 하에서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리고 있음
- 더군다나 어떤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주관적 명예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의 표현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불법정보보다 그 판단에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본인이 소명하지 않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수사권도 없고 법률전문가도 아닌 방심위 위원들이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판단 가능성을 높일 뿐임

2)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과의 일치 필요성

방심위는 주요 개정사유로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의 일치를 주장해 옴

-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온라인상 유통되는 정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과는 그 규율의 주체, 목적, 효과가 전혀 다름. 이미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법률가 선언 등을 통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조건에 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상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함
-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사처벌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통신심의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음
-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주관적인 특성이 강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조항들에 당사자 고소의 요건을 부여하는 입법과정에서,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이한 제도임. 형법의 경우 피의자는 검정에 의한 조사 등 엄중한 형사절차 및 형벌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해 부당한 악의를 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 때문에 고소인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심함. 그런데 그런 절차나 결과를 감수하지 않는 방심위의 절차 때문에 게시자가 심의신청인에게 보복을 하리라는 가정 또 그런 가능성으로 당사자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방심위가 직권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3. 박효종 위원장의 공인 배제 표명에 대한 의견

방심위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및 법률전문가 등의 반대가 거세자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이는 9인의 방심위원들 중 1인의 개인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심의규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음
-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를 공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법적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음. 특히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평판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친지, 측근에 대한 게시물이 명예훼손 심의대상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음
-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판결을 받은 표현의 범위', '사법부의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판결을 받은 표현'이 일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한 비판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임



4. 결론

참여연대는 이번 방심위의 개정안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행정기관인 방심위에 의한 검열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며 개정이유로 삼은 이용자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함. ㉠